

#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

의안 번호	2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7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2018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차 변경계획은, 토지취득 2건 8필지 53,983㎡ 2,000,000천원입니다.

가. 토지 취득 : 2건 8필지 53,983㎡ 2,000,000천원

① 방림 글램핑장 조성 부지 매입(문화관광과)

▷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의 5필지 41,644㎡ 1,383,000천원

②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 매입(시설관리과)

▷ 방림면 방림리 736-3번지의 1필지 12,339㎡ 617,000천원

## 3. 첨부자료

- 가.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1부.
- 나. 사업계획서
- 다. 관계법령 발췌 1부.

#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

[총괄표]

(단위:m<sup>2</sup>,천원)

구 분		변경전			변경후			증△감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득	합계	토지	8	100,182	12,198,623	10	209,402	14,198,623	2	53,983	2,000,000
		건물	3	2,419.94	552,312	3	2,419.94	552,312			
		기타									
	매입	토지	8	100,182	12,198,623	10	209,402	14,198,623	2	53,983	2,000,000
		건물	3	2,419.94	552,312	3	2,419.94	552,312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처분	합계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기타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
## 2018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2차)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예정가격	취득 시기	취득사유	비 고 (소유자)
	지목	소재지	수량				
토지취득 ( 2건, 8필지)			53,983	2,000,000			
소계( 1건 6필지)			41,644	1,383,000			
1	대	방림면 방림리 1618	304	27,360	2018 하반기	방림 글램핑장 조성	조규천
2	전	방림면 방림리 1619	5,468	437,440			조규천
3	전	방림면 방림리 1619-2	330	29,700			강효원
4	임	방림면 방림리 산608-1	860	21,500			김병홍
5	임	방림면 방림리 산608-3	3,570	89,250			고재용
6	임	방림면 방림리 산609-1	31,112	777,750			이정호
소계( 1건 2필지)			12,339	617,000			
1	전	방림면 방림리 736-3	9,161	458,100	2018 하반기	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	최돈열
2	전	방림면 방림리 736-5	3,178	158,900			장연석

<사업계획 1>

# 방림 글램핑장 조성 부지매입

- 뇌운계곡을 활용한 특화된 글램핑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## 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'18. 8월 ~ 11월
- 위 치 :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1618번지 외 5필지
- 사업규모 : 부지매입 41,644m<sup>2</sup>
- 사 업 비 : 군비 1,383,000천원

## □ 취득대상 재산내역

(단위:m<sup>2</sup>,천원)

위 치	지번	지목	지적 (m <sup>2</sup> )	편입면적 (m <sup>2</sup> )	재산가액		소유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
	6필지		130,010	41,644	167,622	1,383,000	
방림면 방림리	1618	대	304	304	7,630	27,360	조규천
방림면 방림리	1619	전	5,468	5,468	133,419	437,440	조규천
방림면 방림리	1619-2	전	330	330	7,656	29,700	강효원
방림면 방림리	산 608-1	임	860	860	423	21,500	김병홍
방림면 방림리	산 608-3	임	3,570	3,570	1,724	89,250	고재용
방림면 방림리	산 609-1	임	119,478	31,112	16,770	777,750	이정호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: 2018. 8월
-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: 2018. 11월까지
- '19년 당초예산 반영요청 : 2018. 11월

□ 연도별 추진계획

○ 투자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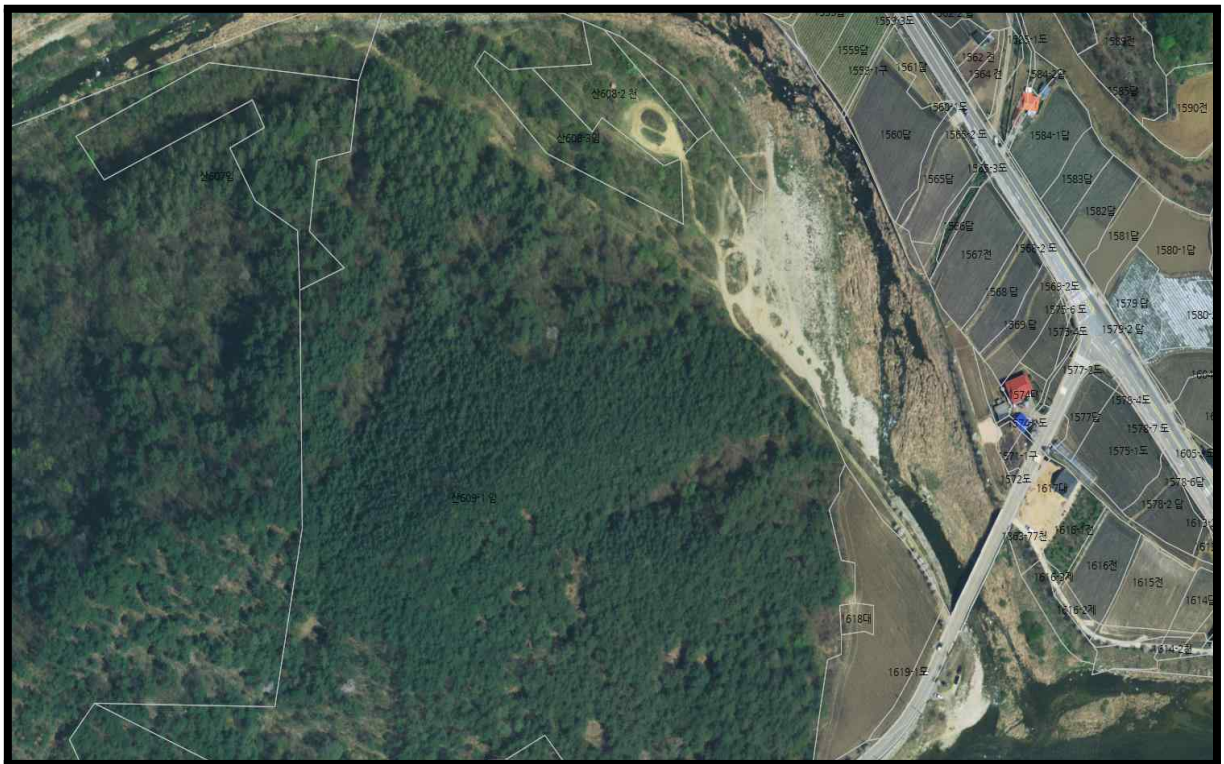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사업비	2018년	2019년	2020년	비고
계	2,883	1,383	750	750	
군 비	2,883	1,383	750	750	

○ 연도별 세부 투자내역

- '18년도 투자계획세부 내역(사업비 산출내역) ----- 1,383백만원
  - 부지매입----- 1,383백만원
  
- '19년도 투자계획세부 내역(사업비 산출내역) ----- 750백만원
  -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----- 100백만원
  - 부지정지 및 기반시설 등 ----- 650백만원
  
- '20년도 투자계획세부 내역(사업비 산출내역) ----- 750백만원
  - 글램핑(7m\*5m) \* 25백만원 \* 10동 ----- 250백만원
  - 오토캠핑장(8m\*6m) 30사이트 ----- 100백만원
  - 화장실 및 샤워장 3개소 ----- 150백만원
  - 간이 수영장 1개소 ----- 100백만원
  - 관리사무소 ----- 150백만원

□ 위치도 및 지적도



<사업계획 2>

# 방림 체육공원 확충사업 부지매입

- 2014년 준공된 방림체육공원의 열악한 편의시설 및 부족한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,
-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고

## 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방림면 방림리 736-3번지, 736-5번지
- 사업내용 : 확충사업 부지 매입(2필지, 12,339㎡)
- 매 입 비 : 617백만원(군비 100%)

## □ 취득대상재산내역

(단위:㎡,원)

토지소재	지번	지목	지적	편입면적	재산가액		소유자
					기준가격	예정가격	
계	2필지		12,339	12,339	383,742,900	616,950,000	
방림면 방림리	736-3	전	9,161	9,161	284,907,100	458,050,000	최돈열
방림면 방림리	736-5	전	3,178	3,178	98,835,800	158,900,000	장연석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: 2018. 8월
- 부지매입 : 2018. 9월
- 1단계 공사 추진 : 2018. 9월 ~ 12월
  - 사업내용 : 화장실 1동 설치 및 주변 수목 식재
  - 사 업 비 : 100백만원(2018년도 2회 추경 예산 반영)

○ 2단계 공사 추진 : 2019. 1월 ~ 10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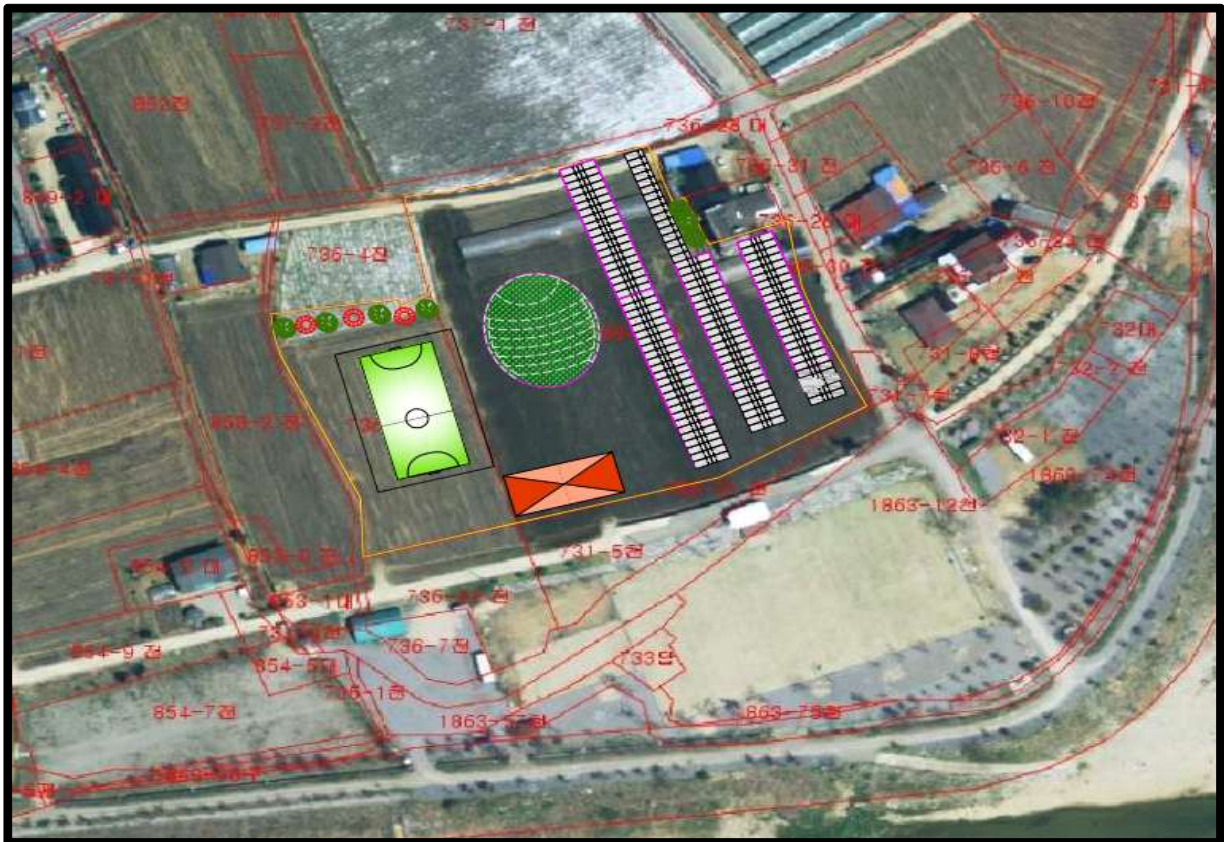
- 사업내용 : 다목적구장(25m×45m)1면 및 주차장 조성, 기타 주변정비

- 사업비 : 600백만원(2019년도 당초 예산 반영)

## □ 기대효과

○ 방림체육공원은 하천부지에 위치하여 영구 시설물 조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, 부지매입을 통한 영구시설물 확충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시설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.

## □ 배치도





# □ 위치도 및 지적도

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-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议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## 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  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  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